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8. 12. 2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1998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1998. 12.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가. 제안이유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감면세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일부 감면내용을 정리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감면세목 확대

-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 면허세를 추가하여 면제토록 함.

◦ 일부 감면내용 정리

- 승용자동차 ⇒ 자동차로 함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범위가 종전의 승용자동차외에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추가됨에 따른 것임
(’98. 5. 22일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동 응)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장애인의 소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장애인이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면허세까지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신 · 구조문대비표